|  |  |  |
| --- | --- | --- |
|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財企 [2012] 1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과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과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중앙관리 유관기업:  기업의 장기적인 안전생산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비용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기업과 종업원, 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재정부  안전감독관리총국  2012년 2월 14일  첨부  **기업 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장기적인 안전생산 투입 기제를 구축하고 안전생산 비용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기업과 종업원, 사회공공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관련 법률, 법규와 《안전생산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2004]2호), 《기업 안전생산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10]23호)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직접 석탄생산, 비탄광산의 채취, 건설공사 시공,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교통운송, 연화폭죽 생산, 야금, 기계제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민용 항공 및 핵연료 포함)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하 기업이라 함)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안전생산비용(이하 안정비용이라 함)이라 함은 기업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하여 비용처리를 하며, 기업 또는 프로젝트 안전생산 조건을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데 전문 사용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안전비용은 "기업이 인출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며 수요를 보장하고 사용을 규율"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이 방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석탄생산이란 석탄자원 채취 작업과 관련한 활동을 가리킨다.  비석탄광산 채취란 석유와 천연가스, 탄층가스(지면채취), 금속광, 비금속광 및 기타 광산자원의 탐사작업과 생산, 선광, 폐갱 및 슬러지 댐의 운행, 폐쇄 등의 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광정과 갱도 공사, 선로파이프와 설비 설치 및 인테리어공사의 신축, 확장, 개축 및 광산 건설을 가리킨다.  위험물이란 국가표준 《위험화물 품목표》(GB12268)와 《위험화학품 목록》에 편성된 물품을 가리킨다.  연화폭죽이란 불꽃과 폭죽제품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민용 흑색화약, 연화화약, 인화화약 등 물품을 가리킨다.  교통운송에는 도로운송, 수상운송, 철도운송, 관로운송이 포함된다. 도로운송이란 기동차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 운송을 가리키며, 수상운송이란 운송선박을 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운송 및 항구적하, 퇴적보관을 가리키며, 철도운송이란 기차를 수단으로 하는 여객과 화물(고속철도와 도시간철도 포함) 운송을 가리키며, 관로운송이란 파이프를 수단으로 액체와 기체 물자를 운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야금이란 금속광물의 제련과 압연가공 관련 활동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흑색금속, 유색금속, 황금 등의 제련생산과 가공처리 활동, 그리고 탄소, 재화재료 등의 주요 생산 공정에 필요한 보조적 공학단계의 생산을 가리킨다.  기계제조란 각종 동력기계, 야금광산기계, 운송기계, 농업기계, 도구, 계기, 특종설비, 대중형 선박, 석유정제장비 및 기타 기계설비의 제조활동을 가리킨다.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에는 무기장비와 탄약의 과학연구, 생산, 시험, 저장운송, 폐기, 유지보수보장 등이 포함된다.  **제2장 안전비용 인출기준**  **제5조** 석탄생산기업은 채취한 원탄 생산량에 따라 월별로 인출한다. 각종 탄광의 원탄 단위생산량의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석탄과 가스(이산화탄소) 방출광정, 가스함량이 높은 광정은 톤 석탄당 30위안  (2) 기타 갱내 광산은 톤 석탄당 15위안  (3) 노천광은 톤 석탄당 5위안.  광정 가스의 등급 분류는 현행 《탄광 안전규칙》과 《광정 가스등급 감정규범》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비탄광산 채취기업은 채취한 원광 생산량에 따라 월별로 인출한다. 각종 광산의 원광 단위생산량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석유는 톤 원유당 17위안  (2) 천연가스, 탄층가스(지면채취)는 세제곱미터 가스당 5위안  (3) 금속광산 중 노천광산은 톤당 5위안, 지하광산은 톤당 10위안  (4) 핵공업광산은 톤당 25위안  (5) 비금속광산 중 노천광산은 톤당 2위안, 지하광산은 톤당 4위안  (6) 소형 노천광석 채석장, 즉 연간 채석총량이 50만 위안 미만이고 최대 채석 높이가 50미터 미만이며 제품이 건축,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산비탈형 노천채석장은 톤당 1위안  (7) 슬러지 댐은 입고 미광량에 따라 계산하며 3등 및 그 이상의 슬러지 댐은 톤당 1위안, 4등 및 5등 슬러지 댐은 톤당 1.5위안.  이 방법 발부 일전에 이미 폐기한 슬러지 댐은 퇴적 선광폐기물의 유효 용적에 따라 인출한다. 용적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매년 5만 위안 인출하고 100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0만 세제곱미터 증가량에 따라 3만 위안 인출하되 매년 인출하는 최고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광생산량은 금속, 비금속광산 슬러지 댐과 폐석장의 종합이용에 사용되는 선광폐기물과 저품위 광석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질탐사단위의 안전비용은 지질탐사프로젝트 또는 공사 총비용의 2%에 따라 인출한다.  **제7조** 건설공사 시공기업은 건축설치공사 제조비를 인출의 의거로 한다. 각 건설공사 유형별 안전비용 인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광산공사는 2.5%  (2) 부동산건축공사, 수리수전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도시레일교통공사는 2%  (3) 도시공용공사, 제련공사, 전기기계 설치공사, 화학석유공사, 항구와 항로공사, 도로공사, 통신공사는 1.5%.  건설공사 시공기업이 인출하는 안전비용은 공사 제조비에 계상하며 경쟁 입찰 시에 삭감하지 못하고 입찰외의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에서 기본건설투자 견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일괄도급단위는 안전비용을 비율에 따라 직접 하도급단위에 지급하고 그 사용을 감독하며, 하도급단위는 중복 인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2%를 인출.  **제9조** 교통운송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일반 화물운송 업무는 1%를 인출  (2) 여객운송업무, 관로운송, 위험물 등 특수 화물운송 업무는 1.5%를 인출.  **제10조** 야금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5%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5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5)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100억 위안 부분은 0.1%를 인출  (6) 영업수입이 10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05%를 인출.  **제11조** 기계제조 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 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를 인출  (2)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를 인출  (3)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50억 위안 부분은 0.1%를 인출  (5) 영업수입이 5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05%를 인출.  **제12조** 연화폭죽 생산기업은 직전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5%를 인출  (2) 영업수입이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부분은 3%를 인출  (3)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부분은 2.5%를 인출  (4)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초과 부분은 2%를 인출.  **제13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은 직전연도 군수품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며, 초과누진 방식을 취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월별로 인출한다.  (1) 화약과 폭약 및 그 제품의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에너지재료, 폭약, 화약, 추진제, 엔진, 로켓, 신관, 화구 등 포함)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3%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1%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5%를 인출.  (2) 핵장비 및 핵연료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0.2%를 인출  ⑤ 핵공사는 3%를 인출(공사 제조비를 인출의 의거로 하며, 경쟁 입찰 시에 입찰 외 관리 실시)  (3) 군용선박(수선 포함)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5%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75%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8%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부분은 0.4%를 인출.  (4) 우주선, 위성, 군용비행기, 전차차량, 화포, 경무기, 대형 안테나 등 제품의 전체, 부분 및 소자의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1.5%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이상, 100억 위안 부분은 0.2%를 인출  ⑤ 영업수입이 10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1%를 인출.  (5) 기타 군용 위험물 연구제조, 생산 및 시험기업  ①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4%를 인출  ② 영업수입이 1,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부분은 2%를 인출  ③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 10억 위안 부분은 0.5%를 인출  ④ 영업수입이 10억 위안 초과 부분은 0.2%를 인출.  **제14조** 중소 미형기업과 대형기업의 직전 연도말 안전비용 잔고가 각각 본 기업 직전연도 영업수입의 5%와 1.5%에 도달한 경우 현지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와 재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기업의 본 연도 안전비용을 유예 인출하거나 적게 인출할 수 있다.  기업규모 분류기준은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중소기업 유형 분류기준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工信部聯企業 [2010] 300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기업은 상술한 기준을 토대로 안전생산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안전비용 인출기준을 적당하게 높일 수 있다.  이 방법을 공포하기 전에 각 성급 정부에서 이미 기업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방법을 하달한 경우 그 인출기준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이 방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을 집행한다.  **제16조** 신설기업과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기업은 당해 연도의 실제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월별로 안전비용을 인출해야 한다.  혼업 경영기업이 업무 유형에 따라 별도 채산이 가능한 경우 업무별 영업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상술한 기준에 따라 안전비용을 각각 인출하며, 별도 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업무수입을 인출의 의거로 하여 주요업무의 인출기준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한다.  **제3장 안전비용의 사용**  **제17조** 석탄생산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석탄과 가스 방출, 고농도 가스광정의 "2개 4위 1체" 종합 방출예방 조치 지출. 여기에는 가스구역의 미리 추출, 보호층 채취구역의 방출예방 조치, 방출지역과 국부의 예측 작업, 국부 방출예방 보충조치, 방출예방 설비와 시설의 갱신 및 개조, 방출 퇴치실험실 건립 등의 지출 포함  (2) 탄광의 안전생산 개조와 중대 잠재적 폐해 정비지출. 여기에는 "1통 3방"(통풍, 가스 방지, 탄진 예방, 화재 방지), 수 오염방지, 급전, 운송 등 시스템 설비개조와 재해 정비공사, 탄광의 기계화 개조, 과압(충격 지압), 열해, 노천광 주변정비, 채취구역의 정비 등의 지출 포함  (3) 탄광 광정 모니터링, 인원배정, 긴급피난, 통풍자구, 급수 구제 및 통신연락안전피난 "6대 시스템"의 개선 지출, 응급구조 기술 장비, 시설배치 및 유지보수 지출, 사고 구명과 긴급피난 시설, 장비의 배치 및 응급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표준화 건설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보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7)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 지출  (9) 안전장비 및 특종 설비 검측검사 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18조** 비탄광 채취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 장비 및 시설("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장비는 제외)의 개선, 개조 및 유지와 중대 안전폐해 정비 지출. 여기에는 광산 분진 종합방지, 화재 예방과 방화, 급수정비, 위험가스 모니터링, 통풍시스템, 산사태 받침 및 예방설비, 전기기계설비, 급전 및 배전 시스템, 운송(승강)시스템과 슬러지 댐 등의 개선과 개조, 유지 지출 및 지압 검측과 모니터링, 노천광 변두리와 비탈 정비, 채취구역의 정비 등의 지출 포함  (2) 비탄광산 검측과 모니터링, 인원배정, 긴급피난, 통풍자구, 급수구명 및 통신연락 등 안전피난 "6대 시스템" 개선 지출, 슬러지 댐 개선 제과정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해상 석유채취 인원에 대한 동적 추적시스템 완선 지출, 응급구조 기술 장비, 설비 배치 및 유지보수 지출, 사고 구명과 긴급피난 장비와 시설의 배치 및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 및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지출  (8) 안전시설 및 특종 설비 검측 검사 지출  (9) 슬러지 댐의 폐쇄 및 폐쇄 후의 유지비용 지출  (10) 지질탐사단위의 야외 응급식품, 응급기구, 응급약품 지출  (11)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19조** 건설공사 시공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보호 장비와 시설 개선, 개조 및 유지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시공현장의 임시 전력시스템, 입구, 방호조치가 없는 고공작업, 기계설비, 고공작업 방호, 교차작업 방호, 방화, 방폭, 분진방지, 방독, 벼락방지, 태풍방지, 지질재해 방지, 지하공사 유해가스 모니터링, 통풍, 임시 안전방호 등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조 기구와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 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 및 특종 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0조** 위험물 생산 및 저장보관 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보호 장비와 시설 개선, 개조 및 유지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직장, 창고, 탱크구역 등 작업장소의 모니터링, 검측, 통풍, 열방지, 온도조정, 방화, 소화, 방폭, 압력방출, 방독, 소독, 중화, 습기방지, 벼락방지, 방정전, 방부식, 누수방지, 방호제방 또는 격리작업 등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조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현장 작업인원 안전방호 용품 배치, 갱신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 설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1조** 교통운송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 시설과 설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여기에는 도로, 수로, 철도, 관로운송 시설과 장비, 적사수단의 안전상황 검측 및 유지 시스템, 운송시설과 장비와 적사수단 부속 안전설비 등의 지출 포함  (2) 주행 기록기능이 있는 차량 포지셔너, 선박통신 내비게이션 및 자동식별시스템, 전자해도 등의 구매, 설치 및 사용 지출  (3) 응급 구제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와 응급 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와 갱신 지출  (7)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9) 안전시설 및 특종설비 검측 검사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2조** 야금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시설과 장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직장, 역, 창고 등 작업현장의 모니터링, 검측, 방화, 방폭, 방추락, 분진방지, 방독,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및 격리작업 등 시설과 설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와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및 갱신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 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3조** 기계제조 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방호시설과 장비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생산 작업장소의 방화, 방폭, 방추락, 방독, 방정전, 방부식, 방분진,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또는 격리작업 등의 설비와 시설의 지출과 대형 크레인의 안전모니터링 관리시스템 설치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안전생산,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 안전평가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5)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6)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갱신 지출  (7)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 보급 응용 지출  (8) 안전시설과 특종장비 검측 검사 지출  (9)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4조** 연화폭죽 생산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설비와 시설의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2) 방폭기계, 전기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  (3) 응급구제 기구, 설비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4)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현장 작업인원의 안전방호용품 배치, 갱신 지출  (8)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지출  (9) 안전시설과 특종장비 검측 검사지출  (10) 안전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5조** 무기장비 연구제조 생산과 시험기업의 안전비용은 아래의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안전설비와 시설의 개선, 개조 및 유지보수 지출("3동시" 요구에 따라 초기 투입한 안전시설은 제외). 이에는 연구실, 직장, 창고, 탱크구역, 장외 시험구역 등의 작업장소 모니터링, 검측, 방전, 방추락, 방폭, 압력방출, 방화, 소화, 통풍, 열방지, 온도조정, 방독, 벼락방지, 방정전, 방부식, 방분진, 소음과 진동 방지, 방사방지, 방호 격리시설 또는 격리작업 등의 시설과 장비 지출 포함  (2) 응급구제, 응급처분, 특종 개인방호기구, 설비, 시설 배치, 유지보수 지출과 응급 훈련 지출  (3) 중대 위험원과 사고 잠재적 폐해 평가, 모니터링 및 정돈개선 지출  (4) 하이테크와 특종 전용설비 안전 감정평가, 안전성능 검사검측 및 작업인원의 포지션 훈련 지출  (5) 안전생산 검사, 평가(신축, 개축,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평가는 제외), 자문 및 표준화 건설 지출  (6) 안전생산 선전, 교육, 훈련 지출  (7) 군용 핵시설(핵폐기물 포함)의 누설, 방사 방지 설비와 시설 지출  (8) 군수산업 위험 화학물, 방사성 물품 및 무기장비 화학기술연구, 시험, 생산, 보관운송, 폐기, 유지보수 보장 과정에서의 안전기술 조치 개조비와 안전방호(작업복 제외) 비용 지출  (9) 복잡한 대형 무기장비 제조, 설치, 시운행의 특수 직종과 특수 작업인원의 훈련 지출  (10) 무기장비 대형 시험안전 전문논증과 안전방호 비용 지출  (11) 특수 군수산업 전자소자 제조 과정에서의 유독 유해 물질 모니터링 및 특종 방호 지출  (12) 안전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신표준, 신공학, 신장비의 보급 응용지출  (13) 무기장비 안전생산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타 지출.  **제2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은 안전비용을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 주관부서에서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제시한 정돈개선 조치 또는 안전생산 표준 도달에 필요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은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채산하고 규정한 범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점용하거나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연도 잉여금은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며, 당해 연도에 인출한 안전비용이 부족한 경우 초과부분은 정상적인 원가비용 루트를 거쳐 채산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주로 감당하는 그룹회사는 내부의결 절차를 거쳐 소속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을 일정 비율에 따라 집중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석탄생산기업과 비탄광산 기업이 이미 간단한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인출한 경우에는 간단한 재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계속 인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용범위는 안전생산 방면의 용도가 더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9조** 광산기업의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 등의 경우에는 안전비용 잔고를 광산 폐갱 안전보장기금에 넘겨 광산 폐갱, 슬러지 댐의 폐기 후의 가능한 위해정비 및 손실배상에 사용해야 한다.  위험물 생산과 저장보관 기업이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비용 잔고를 업태전환, 생산중지, 조업중지 또는 해산하기 전의 위험물 생산 또는 저장보관 설비, 재고제품 및 생산 원재료 처리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재산권 양도, 회사성격 변경 등의 지분구조나 조직형태 변경을 하는 경우 그 안전비용 잔고는 계속 이 방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기업이 업무를 조정하거나 경영을 종료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그 안전비용 잔고는 당기 수익이나 청산수익으로 이월해야 한다.  **제30조** 이 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외의 기업이 마땅히 구비해야 하는 안전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투입은 기존의 루트에 따라 채산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1조** 기업은 내부 안전비용 관리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안전비용 인출과 사용 절차,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규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32조** 기업은 안전비용 관리를 보강하고 연도 안전비용 인출과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재무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기업의 연도 안전비용 사용계획과 직전 연도의 안전비용 인출, 사용상황은 관리권한에 따라 동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 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33조** 기업의 안전비용 회계처리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회계제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4조** 기업이 인출한 안전비용이 기업의 자기인출, 자기사용 자금에 속하는 경우 기타 단위와 부서는 수취, 대리관리 등의 형식으로 그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각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관련 업계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기업의 안전비용 인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제36조** 기업이 이 방법에 따라 안전비용을 인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 및 업계주관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분, 처벌한다.  건설공사 시공 총도급단위가 하청단위에 필요한 안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도급단위에서 안전비용을 유용한 경우 건설, 교통운송, 철도, 수리, 안전생산감독관리, 탄광안전감찰 등 주관부서는 관련 법규, 규장에 따라 처분, 처벌한다.  **제37조** 각 성급 재정부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감찰기구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8조** 이 방법은 재정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이 방법을 참조 집행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석탄생산 안전비용 인출기준을 조정하고 석탄생산 안전비용 사용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통지》(財建 [2005] 168호), 《<연화폭죽 생산기업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建 [2006] 180호), 《<극도위험업종 기업의 안전생산비용 재무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企 [2006] 478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석탄생산 안전비용 인출 및 사용 관리방법》과 <탄광 갱신개조자금 관리문제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財建 [2004] 119호) 등 기타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첨부: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과 사용관리방법  <http://www.gov.cn/zwgk/2012-02/29/content_2079240.htm> |  | **关于印发《企业安全生产费用**  **提取和使用管理办法》的通知**  财企〔2012〕16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安全生产监督管理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安全生产监督管理局，有关中央管理企业：  　为了建立企业安全生产投入长效机制，加强安全生产费用管理，保障企业安全生产资金投入，维护企业、职工以及社会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有关法律法规和国务院有关决定，财政部、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联合制定了《企业安全生产费用提取和使用管理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企业安全生产费用提取和使用管理办法    　　　　　　　　　　　　　　　　　　　　　　　　　　财政部  安全监管总局 　　　　　　　　　　　　　　　　　　　　　　　　　　二○一二年二月十四日    附件：  **企业安全生产费用提取和使用**  **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建立企业安全生产投入长效机制，加强安全生产费用管理，保障企业安全生产资金投入，维护企业、职工以及社会公共利益，依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有关法律法规和《国务院关于加强安全生产工作的决定》（国发〔2004〕2号）和《国务院关于进一步加强企业安全生产工作的通知》（国发〔2010〕23号），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直接从事煤炭生产、非煤矿山开采、建设工程施工、危险品生产与储存、交通运  输、烟花爆竹生产、冶金、机械制造、武器装备研制生产与试验（含民用航空及核燃料）的企业以及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企业）适用本办法。  **第三条**　本办法所称安全生产费用（以下简称安全费用）是指企业按照规定标准提取在成本中列支，专门用于完善和改进企业或者项目安全生产条件的资金。  　 安全费用按照“企业提取、政府监管、确保需要、规范使用”的原则进行管理。  **第四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是：  　 煤炭生产是指煤炭资源开采作业有关活动。  　 非煤矿山开采是指石油和天然气、煤层气（地面开采）、金属矿、非金属矿及其他矿产资源的勘探作业和生产、选矿、闭坑及尾矿库运行、闭库等有关活动。  　 建设工程是指土木工程、建筑工程、井巷工程、线路管道和设备安装及装修工程的新建、扩建、改建以及矿山建设。  　 危险品是指列入国家标准《危险货物品名表》（GB12268）和《危险化学品目录》的物品。  　 烟花爆竹是指烟花爆竹制品和用于生产烟花爆竹的民用黑火药、烟火药、引火线等物品。  　 交通运输包括道路运输、水路运输、铁路运输、管道运输。道路运输是指以机动车为交通工具的旅客和货物运输；水路运输是指以运输船舶为工具的旅客和货物运输及港口装卸、堆存；铁路运输是指以火车为工具的旅客和货物运输（包括高铁和城际铁路）；管道运输是指以管道为工具的液体和气体物资运输。  　 冶金是指金属矿物的冶炼以及压延加工有关活动，包括：黑色金属、有色金属、黄金等的冶炼生产和加工处理活动，以及炭素、耐火材料等与主工艺流程配套的辅助工艺环节的生产。  　 机械制造是指各种动力机械、冶金矿山机械、运输机械、农业机械、工具、仪器、仪表、特种设备、大中型船舶、石油炼化装备及其他机械设备的制造活动。  　 武器装备研制生产与试验，包括武器装备和弹药的科研、生产、试验、储运、销毁、维修保障等。    **第二章　安全费用的提取标准**  **第五条**　煤炭生产企业依据开采的原煤产量按月提取。各类煤矿原煤单位产量安全费用提取标准如下：  　　（一）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矿井、高瓦斯矿井吨煤30元；  　　（二）其他井工矿吨煤15元；  　　（三）露天矿吨煤5元。  　　矿井瓦斯等级划分按现行《煤矿安全规程》和《矿井瓦斯等级鉴定规范》的规定执行。  **第六条**　非煤矿山开采企业依据开采的原矿产量按月提取。各类矿山原矿单位产量安全费用提取标准如下：  　　（一）石油，每吨原油17元；  　　（二）天然气、煤层气（地面开采），每千立方米原气5元；  　　（三）金属矿山，其中露天矿山每吨5元，地下矿山每吨10元；  　　（四）核工业矿山，每吨25元；  　　（五）非金属矿山，其中露天矿山每吨2元，地下矿山每吨4元；  　　（六）小型露天采石场，即年采剥总量50万吨以下，且最大开采高度不超过50米，产品用于建筑、铺路的山坡型露天采石场，每吨1元；  　　（七）尾矿库按入库尾矿量计算，三等及三等以上尾矿库每吨1元，四等及五等尾矿库每吨1.5元。  　　本办法下发之日以前已经实施闭库的尾矿库，按照已堆存尾砂的有效库容大小提取，库容100万立方米以下的，每年提取5万元；超过100万立方米的，每增加100万立方米增加3万元，但每年提取额最高不超过30万元。  　　原矿产量不含金属、非金属矿山尾矿库和废石场中用于综合利用的尾砂和低品位矿石。  　　地质勘探单位安全费用按地质勘查项目或者工程总费用的2%提取。  **第七条**　建设工程施工企业以建筑安装工程造价为计提依据。各建设工程类别安全费用提取标准如下：  　　（一）矿山工程为2.5%；  　　（二）房屋建筑工程、水利水电工程、电力工程、铁路工程、城市轨道交通工程为2.0%；  　　（三）市政公用工程、冶炼工程、机电安装工程、化工石油工程、港口与航道工程、公路工程、通信工程为1.5%。  　　建设工程施工企业提取的安全费用列入工程造价，在竞标时，不得删减，列入标外管理。国家对基本建设投资概算另有规定的，从其规定。  　　总包单位应当将安全费用按比例直接支付分包单位并监督使用，分包单位不再重复提取。  **第八条**　危险品生产与储存企业以上年度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采取超额累退方式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4%提取；  　　（二）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2%提取；  　　（三）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四）营业收入超过1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第九条**　交通运输企业以上年度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普通货运业务按照1%提取；  　　（二）客运业务、管道运输、危险品等特殊货运业务按照1.5%提取。  **第十条**　冶金企业以上年度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采取超额累退方式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3%提取；  　　（二）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1.5%提取；  　　（三）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四）营业收入超过10亿元至5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五）营业收入超过50亿元至100亿元的部分，按照0.1%提取；  　　（六）营业收入超过100亿元的部分，按照0.05%提取。  **第十一条**　机械制造企业以上年度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采取超额累退方式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2%提取；  　　（二）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1%提取；  　　（三）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四）营业收入超过10亿元至50亿元的部分，按照0.1%提取；  　　（五）营业收入超过50亿元的部分，按照0.05%提取。  **第十二条**　烟花爆竹生产企业以上年度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采取超额累退方式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营业收入不超过200万元的，按照3.5%提取；  　　（二）营业收入超过200万元至500万元的部分，按照3%提取；  　　（三）营业收入超过500万元至1000万元的部分，按照2.5%提取；  　　（四）营业收入超过1000万元的部分，按照2%提取。  **第十三条**　武器装备研制生产与试验企业以上年度军品实际营业收入为计提依据，采取超额累退方式按照以下标准平均逐月提取：  　　（一）火炸药及其制品研制、生产与试验企业（包括：含能材料，炸药、火药、推进剂，发动机，弹箭，引信、火工品等）：  　　 1．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5%提取；  　　 2．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3%提取；  　　 3．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1%提取；  　　 4．营业收入超过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二）核装备及核燃料研制、生产与试验企业：  　　1．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3%提取；  　2．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2%提取；  　　3．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4．营业收入超过1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5．核工程按照3%提取（以工程造价为计提依据，在竞标时，列为标外管理）。  　　（三）军用舰船（含修理）研制、生产与试验企业：  　　1．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2.5%提取；  　　2．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1.75%提取；  　　3．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8%提取；  　　4．营业收入超过10亿元的部分，按照0.4%提取。  　　（四）飞船、卫星、军用飞机、坦克车辆、火炮、轻武器、大型天线等产品的总体、部分和元器件研制、生产与试验企业：  　　1．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2%提取；  　　2．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1.5%提取；  　　3．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4．营业收入超过10亿元至10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5．营业收入超过100亿元的部分，按照0.1%提取。  　　（五）其他军用危险品研制、生产与试验企业：  　　1．营业收入不超过1000万元的，按照4%提取；  　　2．营业收入超过1000万元至1亿元的部分，按照2%提取；  　　3．营业收入超过1亿元至10亿元的部分，按照0.5%提取；  　　4．营业收入超过10亿元的部分，按照0.2%提取。  **第十四条**　中小微型企业和大型企业上年末安全费用结余分别达到本企业上年度营业收入的5%和1.5%时，经当地县级以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商财政部门同意，企业本年度可以缓提或者少提安全费用。  　　企业规模划分标准按照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财政部《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规定执行。  **第十五条**　企业在上述标准的基础上，根据安全生产实际需要，可适当提高安全费用提取标准。  　　本办法公布前，各省级政府已制定下发企业安全费用提取使用办法的，其提取标准如果低于本办法规定的标准，应当按照本办法进行调整；如果高于本办法规定的标准，按照原标准执行。  **第十六条**　新建企业和投产不足一年的企业以当年实际营业收入为提取依据，按月计提安全费用。  　　混业经营企业，如能按业务类别分别核算的，则以各业务营业收入为计提依据，按上述标准分别提取安全费用；如不能分别核算的，则以全部业务收入为计提依据，按主营业务计提标准提取安全费用。    **第三章　安全费用的使用**  **第十七条**　煤炭生产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煤与瓦斯突出及高瓦斯矿井落实“两个四位一体”综合防突措施支出，包括瓦斯区域预抽、保护层开采区域防突措施、开展突出区域和局部预测、实施局部补充防突措施、更新改造防突设备和设施、建立突出防治实验室等支出；  　　（二）煤矿安全生产改造和重大隐患治理支出，包括“一通三防”（通风，防瓦斯、防煤尘、防灭火）、防治水、供电、运输等系统设备改造和灾害治理工程，实施煤矿机械化改造，实施矿压（冲击地压）、热害、露天矿边坡治理、采空区治理等支出；  　　（三）完善煤矿井下监测监控、人员定位、紧急避险、压风自救、供水施救和通信联络安全避险“六大系统”支出，应急救援技术装备、设施配置和维护保养支出，事故逃生和紧急避难设施设备的配置和应急演练支出；  　　（四）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五）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标准化建设支出；  　　（六）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七）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八）安全生产适用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九）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十）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十八条**　非煤矿山开采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和重大安全隐患治理支出，包括矿山综合防尘、防灭火、防治水、危险气体监测、通风系统、支护及防治边帮滑坡设备、机电设备、供配电系统、运输（提升）系统和尾矿库等完善、改造和维护支出以及实施地压监测监控、露天矿边坡治理、采空区治理等支出；  　　（二）完善非煤矿山监测监控、人员定位、紧急避险、压风自救、供水施救和通信联络等安全避险“六大系统”支出，完善尾矿库全过程在线监控系统和海上石油开采出海人员动态跟踪系统支出，应急救援技术装备、设施配置及维护保养支出，事故逃生和紧急避难设施设备的配置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标准化建设支出；  　　（五）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六）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七）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八）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九）尾矿库闭库及闭库后维护费用支出；  　　（十）地质勘探单位野外应急食品、应急器械、应急药品支出；  　　（十一）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十九条**　建设工程施工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施工现场临时用电系统、洞口、临边、机械设备、高处作业防护、交叉作业防护、防火、防爆、防尘、防毒、防雷、防台风、防地质灾害、地下工程有害气体监测、通风、临时安全防护等设施设备支出；  　　（二）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五）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六）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七）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八）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九）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条**　危险品生产与储存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车间、库房、罐区等作业场所的监控、监测、通风、防晒、调温、防火、灭火、防爆、泄压、防毒、消毒、中和、防潮、防雷、防静电、防腐、防渗漏、防护围堤或者隔离操作等设施设备支出；  　　（二）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五）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六）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七）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八）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九）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一条**　交通运输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道路、水路、铁路、管道运输设施设备和装卸工具安全状况检测及维护系统、运输设施设备和装卸工具附属安全设备等支出；  　　（二）购置、安装和使用具有行驶记录功能的车辆卫星定位装置、船舶通信导航定位和自动识别系统、电子海图等支出；  　　（三）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四）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五）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六）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七）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八）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九）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十）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二条**　冶金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车间、站、库房等作业场所的监控、监测、防火、防爆、防坠落、防尘、防毒、防噪声与振动、防辐射和隔离操作等设施设备支出；  　　（二）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和咨询及标准化建设支出；  　　（五）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六）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七）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八）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九）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三条**　机械制造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生产作业场所的防火、防爆、防坠落、防毒、防静电、防腐、防尘、防噪声与振动、防辐射或者隔离操作等设施设备支出，大型起重机械安装安全监控管理系统支出；  　　（二）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五）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六）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七）安全生产适用的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  　　（八）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九）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四条**　烟花爆竹生产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设备设施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  　　（二）配备、维护、保养防爆机械电器设备支出；  　　（三）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器材、设备支出和应急演练支出；  　　（四）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五）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六）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七）配备和更新现场作业人员安全防护用品支出；  　　（八）安全生产适用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九）安全设施及特种设备检测检验支出；  　　（十）其他与安全生产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五条**　武器装备研制生产与试验企业安全费用应当按照以下范围使用：  　　（一）完善、改造和维护安全防护设施设备支出（不含“三同时”要求初期投入的安全设施），包括研究室、车间、库房、储罐区、外场试验区等作业场所的监控、监测、防触电、防坠落、防爆、泄压、防火、灭火、通风、防晒、调温、防毒、防雷、防静电、防腐、防尘、防噪声与振动、防辐射、防护围堤或者隔离操作等设施设备支出；  　　（二）配备、维护、保养应急救援、应急处置、特种个人防护器材、设备、设施支出和应急演练支出；  　　（三）开展重大危险源和事故隐患评估、监控和整改支出；  　　（四）高新技术和特种专用设备安全鉴定评估、安全性能检验检测及操作人员上岗培训支出；  　　（五）安全生产检查、评价（不包括新建、改建、扩建项目安全评价）、咨询和标准化建设支出；  　　（六）安全生产宣传、教育、培训支出；  　　（七）军工核设施（含核废物）防泄漏、防辐射的设施设备支出；  　　（八）军工危险化学品、放射性物品及武器装备科研、试验、生产、储运、销毁、维修保障过程中的安全技术措施改造费和安全防护（不包括工作服）费用支出；  　　（九）大型复杂武器装备制造、安装、调试的特殊工种和特种作业人员培训支出；  　　（十）武器装备大型试验安全专项论证与安全防护费用支出；  　　（十一）特殊军工电子元器件制造过程中有毒有害物质监测及特种防护支出；  　　（十二）安全生产适用新技术、新标准、新工艺、新装备的推广应用支出；  　　（十三）其他与武器装备安全生产事项直接相关的支出。  **第二十六条**　在本办法规定的使用范围内，企业应当将安全费用优先用于满足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以及行业主管部门对企业安全生产提出的整改措施或者达到安全生产标准所需的支出。  **第二十七条**　企业提取的安全费用应当专户核算，按规定范围安排使用，不得挤占、挪用。年度结余资金结转下年度使用，当年计提安全费用不足的，超出部分按正常成本费用渠道列支。  　　主要承担安全管理责任的集团公司经过履行内部决策程序，可以对所属企业提取的安全费用按照一定比例集中管理，统筹使用。  **第二十八条**　煤炭生产企业和非煤矿山企业已提取维持简单再生产费用的，应当继续提取维持简单再生产费用，但其使用范围不再包含安全生产方面的用途。  **第二十九条**　矿山企业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的，应当将安全费用结余转入矿山闭坑安全保障基金，用于矿山闭坑、尾矿库闭库后可能的危害治理和损失赔偿。  　　危险品生产与储存企业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的，应当将安全费用结余用于处理转产、停产、停业或者解散前的危险品生产或者储存设备、库存产品及生产原料支出。  　　企业由于产权转让、公司制改建等变更股权结构或者组织形式的，其结余的安全费用应当继续按照本办法管理使用。  　　企业调整业务、终止经营或者依法清算，其结余的安全费用应当结转本期收益或者清算收益。  **第三十条**　本办法第二条规定范围以外的企业为达到应当具备的安全生产条件所需的资金投入，按原渠道列支。    **第四章　监督管理**  **第三十一条**　企业应当建立健全内部安全费用管理制度，明确安全费用提取和使用的程序、职责及权限，按规定提取和使用安全费用。  **第三十二条**　企业应当加强安全费用管理，编制年度安全费用提取和使用计划，纳入企业财务预算。企业年度安全费用使用计划和上一年安全费用的提取、使用情况按照管理权限报同级财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和行业主管部门备案。  **第三十三条**　企业安全费用的会计处理，应当符合国家统一的会计制度的规定。  **第三十四条**　企业提取的安全费用属于企业自提自用资金，其他单位和部门不得采取收取、代管等形式对其进行集中管理和使用，国家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三十五条**　各级财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和有关行业主管部门依法对企业安全费用提取、使用和管理进行监督检查。  **第三十六条**　企业未按本办法提取和使用安全费用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和行业主管部门会同财政部门责令其限期改正，并依照相关法律法规进行处理、处罚。  　 建设工程施工总承包单位未向分包单位支付必要的安全费用以及承包单位挪用安全费用的，由建设、交通运输、铁路、水利、安全生产监督管理、煤矿安全监察等主管部门依照相关法规、规章进行处理、处罚。  **第三十七条**　各省级财政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煤矿安全监察机构可以结合本地区实际情况，制定具体实施办法，并报财政部、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备案。    **第五章　附　则**  **第三十八条**　本办法由财政部、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负责解释。  **第三十九条**　实行企业化管理的事业单位参照本办法执行。  **第四十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关于调整煤炭生产安全费用提取标准加强煤炭生产安全费用使用管理与监督的通知》（财建〔2005〕168号）、《关于印发〈烟花爆竹生产企业安全费用提取与使用管理办法〉的通知》（财建〔2006〕180号）和《关于印发〈高危行业企业安全生产费用财务管理暂行办法〉的通知》（财企〔2006〕478号）同时废止。《关于印发<煤炭生产安全费用提取和使用管理办法>和<关于规范煤矿维简费管理问题的若干规定>的通知》（财建〔2004〕119号）等其他有关规定与本办法不一致的，以本办法为准。    附件下载：企业安全生产费用提取和使用管理办法.doc  <http://www.gov.cn/zwgk/2012-02/29/content_2079240.htm> |